

# 선거공고

이천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선거 선거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이천축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인)



1. 선거명 : 이천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선거

2. 선거구의 명칭 및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 수 및 선거일정

(단위 : 명)

선거구명	선출 대의원수(명)	선거일시	선거장소	비고
이천(동)	3명 (남성 2명, 여성 1명)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이천축산농협 본점	
장호원	5명 (남성 4명, 여성 1명)			
부발	3명			
신둔	3명 (남성 2명, 여성 1명)			
백사	6명 (남성 5명, 여성 1명)			
마장	3명 (남성 2명, 여성 1명)			
호법	6명 (남성 5명, 여성 1명)			
대월	4명 (남성 3명, 여성 1명)			
모가	8명 (남성 6명, 여성 2명)			
설성	9명 (남성 8명, 여성 1명)			
울면	4명			
합계	54명			

※ 투표시간 : 09시~14시(선거사유 발생지역 적용시간)

※ 선거일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3. 선거권자

- ①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
- ② **대의원의 임기만료일 (2023년 4월 26일)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  
(☞ 임기만료일전 180일 기준일 : 2022년 10월 28일)

### 4. 피선거권자 자격 및 제한사항

#### [조합정관]

**제46조(대의원회)** ⑤대의원은 우리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2조(자격제한 등)** ①대의원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해당 선출구역(이하 "선거구"라 한다) 조합원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고, 제56조제1항제11호 중 “5백만원”은 “1천만원”으로, “6월”은 “1년”으로 한다.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 중앙회 또는 법 제49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5백만원이상의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사람

2.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500좌**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2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3,000만원** 이상

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적금의 평균잔액 : **2,500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5,000만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15만원** 이상

4.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참고 : 조합정관 제122조 2항 요약자료>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출 자 금		250만원 이상	필수충족요건
사업 이용 실적 (주)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3,000만원 이상	필수충족요건
	신용사업의 예금·적금 평균잔액	2,500만원 이상	부가 충족요건 (1가지만 충족하면 됨)
	신용사업의 대출금 평균잔액	5,000만원 이상	
	보험사업의 수입수수료 금액	15만원 이상	

주)선거일공고일(2023.03.21.) 기준 2년 동안 이용한 금액

## 5. 선거인명부의 열람과 장소

- 가. 열람기간 : 2023.03.23.(목) ~ 04.01.(토)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 나. 열람장소 : 본점 및 신용업무를 하는 지점 (경제사업장 및 생장물사업소 제외)
- 다. 열람권자 : 선거권이 있는 자
- 마.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에 오기·누락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당해 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

## 6. 후보자 등록신청 및 접수장소

- 가. 신청기간 : 2023. 03. 23. (목) ~ 03. 24. (금) 09:00 ~ 17:00 < 2일간 >
- 나. 접수장소 : 이천축산업협동조합 본점 2층 기획관리과
- 다. 신청방법 :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신청등록
- 라. 후보자등록 서류
  - 조합에 제출하실 서류는 **후보자 신청 서류(본인 발급서류)와 신분증 및 도장을 반드시 지참** 하셔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관74조]

본인 발급서류(타기관)	조합에서 작성·발급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사무소)</li> <li>- 최종학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li> <li>- 퇴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li> <li>- 금융거래확인서(타금융기관 대출금 연체가 있는 경우 해당금융기관 발급)</li> <li>- 명함판(5x7)사진 2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자등록신청서</li> <li>- 출자금원장 사본</li> <li>- 연체채무유무확인서</li> <li>- 사업이용실적 충족 유무 확인서</li> <li>- 비경업사실확인서 (및 각서)</li> <li>- 공명선거실천 서약서</li> <li>- 금융정보제공동의서</li> </ul>

※ 후보자등록시 **타기관 발급서류는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 7. 기타사항

### 당선인 결정 (조합정관 제133조)

- ①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②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하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전원을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 ③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일전일까지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 되어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하로 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에 의해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할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될 불법 행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代☎634-6611, 담당 차장 김진오(630-0203), 과장대리 오세용(630-0205)】**